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0의5호서식] <신설 2015.3.25.>

지정번호 제　　호

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

기 관 명			
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소 재 지	(전화번호:　　)		
최초지정 연월일			
지정사항	야생동물 질 병		
	검사항목	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환 경 부 장 관　　직인

210㎜×297㎜(백상지 120g/㎡)